

# < 내국인 구인노력 안내자료 >

○ III. 고용허가서의 발급

## III. 고용허가서의 발급

### 1 내국인 구인신청

#### (1) 근거법령

##### 법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 시행규칙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 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 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 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규칙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①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농업·축산업 및 어업: 7일
  2. 제1호 외의 업종: 14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15.12.30.]

## (2) 구인신청 방법

### ■ Work-Net 등록

- 내국인 구인신청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에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신청한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 모집직종

- 구인신청 시 모집직종은 반드시 외국인력 고용가능 직종에 적합한 경우여야 함
-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으로 구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상의 내국인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구인노력 방법

#### ■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원칙 7일, 예외 3일

#### - (원칙) 구인노력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7일) 이상

\* '18.1.1.에 구인신청을 하였다면, '18.1.15.부터 4.14.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가능. 다만, 구인신청한 날보다 워크넷 인증이 늦어질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지원과에 신속처리 협조 요청

예시) '18.8.1.에 10명의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18. 8. 14.까지 1명의 내국인도 채용하지 못하였다면, '18.8.15.부터 '18.11.14.까지 1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8.15. 2명, 9.15. 2명 등 여러 번 신청도 가능

#### - (예외) 다만,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3일)로 단축(워크넷 등록은 필수)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목에 해당)

가. 고용센터에서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2개월 이내)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다. 구인공고(인터넷 공고 포함) 등을 통해 직접 면접을 한 경우로서 이력서, 면접장소, 면접일시, 연락처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근 2개월 내로 제한)

\* 아래 가, 나, 다에 해당되는 매체 외의 인터넷사이트는 불허

\* 매체 공고 내용에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함

가. 신문: 신문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종합/경제 일간신문 및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나. 잡 지: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정기간행물>‘법인명 검색’을 통하여 간행물의 종류 확인

다. 방 송: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

-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방송 및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등

### ■ 구인노력의무 충족여부의 판단

-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 내국인 구인노력 활성화 방안(외국인력정책과-2253호, 2012. 7.19.)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 미채용 시 취업알선 부서(취업지원과)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
  - \*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거부 기준
    - ① (알선거부)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 ② (채용절차 미진행)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알선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면접을 보지 않았다면 채용절차 미진행으로 판단)
    - ※ 특별한 사유: 구직자의 면접 거절, 연락두절, 사업주의 폐업·휴업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③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거부) 구인자가 제시한 채용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 구직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미채용 사업장은 채용거부로 처리하고, 구인노력 실적은 점수제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



**Tip**

내국인 구인 신청의 취업지원과 알선에 대해 채용결과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EPS시스템 상 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취업지원부서에 채용결과 처리를 완료도록 안내 후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타 기관 알선 건은 고용센터 자체적 채용결과처리가 불가하므로 해당 알선기관에 결과 처리 안내하여야 함.